

◎財產權收用時補償

現 行 憲 法

22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產權
은 보장된다. 그 内容과 限
界는 法律로 정한다.

② 財產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
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
收用·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
로써 하되, 補償을 支給하여야
한다. 補償은 公益 및 關係
者의 利益을 정당하게 衡量하
여 法律로 정한다.

民 主 正 義 黨

第 22 條 ①—②
(現行과 같음)

統 一 民 主 黨

第 24 條 ①—②
(現行과 같음)

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
收用·使用 또는 제한은 法
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정당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
행한다.

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
收用·使用 또는 制限은 法
律로써 하되, 正當한 補償을
支給하여야 한다.

○ 「正當한 補償」 주장 근거

- 財產權은 절대 保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收用에 대하여는收用時點을 기준으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하며, 事前에告示된 基準地價에 따라 補償하는 것은 財產權 侵害에 해당됨.
- 正當補償을 하고 난후 開發利益 등은 受益者 負擔金을 부과하여 환수할 수 있음.

○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 正當한 補償 주장 근거

- 公共開發로 인한 地價上昇 등 開發利益은 개발주체에 归屬되어야 하므로 현행 基準地價制度 (國土利用管理法, 土地收用法등)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.
- 受益者 負擔金에 의하여 開發利益을 환수하려는 것은 立法技術上 매우 어려우며 國民들에게 새로운 부담이라는 印象을 줄 우려가 있음.